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2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안호영 · 박 정 · 윤준병
이성윤 · 차지호 · 박해철
김남근 · 민병덕 · 김우영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한편, ESG 경영·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생

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3. 제6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4. 제15조의4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부금품 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실적이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비용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①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u>
<u><신 설></u>	<u>제15조의2(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u>

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

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기술
적 지원

3. 제6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
적 평가

4. 제15조의4에 따른 민·관 협
의체 구성·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부금품 접수·관리 등
에 관한 업무

5.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
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
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의 추진실
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

<신 설>

며, 그 실적이 우수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비용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 ①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

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등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에 기탁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방식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
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
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기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태계서비스 유
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